

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

제 0000-00000 호

0000. 00. 00.

「군사법원법」 제232조의6·제24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1조 또는 「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라 다음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접견 등 금지를 결정합니다.

[대상사건]

사 건 번 호 :

죄 명 :

[피의자 인적사항]

성 명 : 생 년 월 일 :

주 거 :

소 속 (직 업) :

체 포 · 구 속 일 자 :

접견 등 금지기간 : 0000. 00. 00. ~ 0000. 00. 00. (일)

[접견 등 금지 결정 내용]

[결정 사유]

○○○수사부대 · 기관

군사법경찰관

성 명 (인)